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·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

위반

[부산지방법원 2009. 11. 26. 2009고정1696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김명선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권우현외 1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2를 벌금 1,000,000원에, 피고인 1을 벌금 500,000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